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료 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
- 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다.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제5조)
-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제7조)
- 마.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감면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안 제10조)
-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부가가치세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주민등록표”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을 “이 조에서 같다)를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해당사업용”을 “해당 사업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한지”를 “한 지”로 한다.

제9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면 신청서”를 “감면 신청서”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구미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이”를 “구미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감면 받”을 “감면받”으로, “시장”을 “구미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u>주민등록표</u> (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u>주민등록표</u> -----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

----- 해당하는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이 조에서 같다)
를 2019년 12월 31일-----

제한다.

②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2019년 12월 31일 -----

----- 해당 사업용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이

“이 조”에서 같다)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
다.

1. ~ 4.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구
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

조-----.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

----- 2019년 12월 31일-----

제8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한 지 -----

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
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
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illegible][illegible]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
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
0원

② (생략)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
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
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

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
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

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

-- 감면 신청서 -----

구미시장-----

구미시장이 -----

② 구미시장-----

③ -----

- 시장·군수·구청장-----

④ -----

본거지 관할 <u>시장(군수)</u> 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u>감면</u>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u>시장</u> 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 ----- <u>감면받</u> ----- ----- <u>구미시장</u> -----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월 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

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 ③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 ⑩ 생략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영 활
	담 당	엄 기 득
	담 당 자	이 수 경 (480-6852)